

# 공지사항

## 전자부품 등의 생산자 단체표준화 요령 공고안내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114호〉

전자부품 등의 생산자 단체표준화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2. 6. 24.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전자 생산업체간에 합리적인 표준을 제정 채용함으로써 기업의 이익과 전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말하는 “전자부품 등의 생산자 단체표준화”(이하 “표준화”라 한다)라 함은 한국전자공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가 전자 생산업체간에 공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제정, 채용토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①항에서 전자 생산업체간의 공업표준화라 함은 제품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성분, 용어, 시험방법 등 공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통일하거나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명칭) 이 요령에 의해 제정된 공업표준을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표준화 규격”(이하 “진흥회 표준화규격 또는 EIAK규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4 조(적용범위) 이 요령의 적용범위는 전자부품, 전자재료, 전자기기, 전자장치(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 제 2 장 표준화 추진기구

제 5 조(표준화 추진기관) 진흥회 표준화규격

은 표준화위원회의 검토와 소관산업별 협의 회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이하 “진흥회장”이라 한다)이 제정한다.

제 6 조(표준화위원회) ① 진흥회장은 진흥규격 표준화를 위하여 대상분야별로 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용한다.

② 진흥회장은 표준화 대상분야의 생산업체 및 그 수요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시 관련 학계, 연구소, 단체 및 기관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화 대상품목의 발굴 및 선정
2. 표준화 관련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3. 표준화규격의 심의
4. 표준화규격의 보급 및 사후관리
5. 기타 진흥회 표준화사업에 관한 의견제시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한다.

제 7 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표준화 대상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진흥회의 직원중에서 진흥회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제 3 장 표준화규격의 제정

제 8 조(표준화 대상과제의 신청 및 발굴) ① 진흥회 회원사 또는 산업별 협의회나 품목별 분과위원회가 표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과제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 1호에 의거하여 표준화 신청서를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공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이나 연구

# 공지사항

소 또는 관련기관, 단체가 표준화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과제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 1호에 의거하여 표준화 신청서를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표준화 대상과제의 선정 및 공고)** 진흥회장은 제8조에 의해 신청한 표준화 대상과제에 대해 관련업계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 표준화 대상과제를 선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표준화 관련자료의 수집)** ① 진흥회는 제9조의 표준화 대상과제별로 외국의 관련기관 및 국내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표준화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야 한다.

② 진흥회 회원사는 제①항에 의거하여 진흥회로부터 표준화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성실하게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 조(표준화규격의 심의)** ① 표준화규격의 제정을 위한 심의는 제6조 규정에 의한 당해 표준화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동 표준화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심의가 곤란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최종심의는 그 위원회에서 하여야 한다.

② 표준화규격의 심의가 종료되면 그 표준화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회장에게 표준화규격 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③ 표준화위원회는 표준화의 규격을 심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국제표준화 또는 우리나라 표준화규격이나 동종업계 및 수요업계의 사내 표준화규격과 상충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 12 조(표준화규격의 공고)** ① 진흥회장은 제 11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표준화위원장으로부터 표준화규격 제정을 건의 받았을 때에는 그에 분류 기호를 부여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분류기호에는 제3조 규정에 의

한 규격의 명칭, 제정년도, 산업별분류기호,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규격 19921-P-250)

**제 13 조(표준화규격의 개정 및 폐지)** 표준화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 장 표준화규격 보급 및 채용

**제 14 조(표준화규격의 보급)** 진흥회장은 제정된 표준화규격을 당해업계와 그 수요업계 및 관련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제 15 조(표준화규격의 채용)** 진흥회 회원사는 진흥회 표준화규격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그 채용이 어려울 때에도 채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 16 조(표준화업체 지원)** 진흥회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해 진흥회 회원사가 표준화규격을 채용하기 위해 새로 개발을 하거나 생산시설을 개체코자 할 때에는 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7 조(사후관리)** 진흥회장은 표준화규격의 채용실태를 조사하고 채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하여 표준화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 5 장 보 칙

**제 18 조(표준화사업비)** 표준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표준화로 인하여 성과가 기대되는 그 산업의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담하거나 진흥회 또는 정부 및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조달할 수 있다.

**제 19 조(수당지급)** 진흥회장은 표준화위원회 위원중 관련업계가 아닌 학계, 연구소 등의

# 공지사항

위원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0 조(표준화사업본부) ① 진흥회장은 표준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화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표준화사업본부를 진흥회내에 설치한다.

② 표준화사업본부장은 진흥회 부품산업부장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표준화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요령은 제정된 날(92.6.24)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요령을 제정하기 이전에 추진된 표준화사업은 이 요령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 통신시설 입찰 안내

가나 체신청(Ghana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Corp/CPT)은 일본의 OECF 원조자금에 의한 전화통신 확장공사의 아래 6개 세부공사에 대한 국제 입찰을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회원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공사 A : 전화교환시설
- B : External Plant
- C : 라디오 송신시설
- D : Coast Station 시설
- E : 정비차량
- F : 건물
- 동 공사는 정비차량을 제외하고는 TURN-KEY 베이스임
- 문의처 : The Project Manager/STP  
Project Management Unit  
GPT HQ Accra Ghana

TEL. 233-21-228951

FAX. 233-21-667979

- 입찰마감 : '92.8.27, 11:00
- 입찰결과공개 : '92.8.27, 14:00

### 국내신규개발물품에 대한 외국의 저가공세사례 조사 안내

금년들어 전반적으로 수입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기업이 특정물품을 새로이 국산개발할 경우 국산화와 동시에 외국(특히 일본)의 저가공세로 생산초기단계부터 도산하는 등 국내기술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울러 성숙산업내 저기술 농농집약적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인하되어 산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신규개발물품에 대한 저가공세사례를 조기에 파악하여 필요시 수시로 재무부에 건의하여 당해물품에 대해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사례를 아래의 양식에 의거하여 매월 5일까지 자료를 취합하시어 본회 무역과(직통 : 554~6739, 대표 : 553~0941/7, 교환 : 34, FAX : 555~737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용도	국산개발 이전	국산개발후 공급가격		외국기업	개발업체
		수입가격	수입품	국산		

〈신규 국산개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운용대책〉

### 1. 국산개발물품에 대한 외국의 저가공세

- 수입물품의 국내개발시, 국산화와 동시에 對韓 저가수출공세로 국내산업고사 우려
- 높은 가격을 받던 외국기업(특히 일본)이

# 공지사항

국산개발되면 국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Predatory Pricing)

- 국산개발업체는 저가 외산물품과 경쟁하기 위하여 생산초기부터 원가이하 판매, 가동을 저하 등으로 투자비 회수도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저가공세사례〉

제품명	용도	국산개발 이전 수입가격	국산개발후공급가격		개발업체
			수입	국산	
정전 제거 브러쉬	FAX, 복사기 등에 사용	5,000원/개	300원	400원	창성기업
Connector	PCB연결선	10원/핀당	6원/핀당	7원/핀당	연호전자
Brushless DC Fan	OA기기용	4.2\$/개	2.4\$/개	3.3\$/개	동양화학
소형배어링	VTR	0.57\$/개	0.50\$/개	0.54\$/개	한국정밀
방사용니플	합성섬유사 제조용	1,100원/hole	670원/hole	800원/hole	대한정밀

→ 반덤핑등 산업피해구제제도 활용에 한계 →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중소기업의 제소곤란

- 산업피해구제는 덤핑 또는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소토록 되어 있으나, 상대국 기업들이 적용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음
- 국산개발전에는 자국 내수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공급후 국산개발시에는 자국 내수가격 수준으로 인하공급하므로써 덤핑혐의 회피
- 수입물량도 기 공급수준으로 유지하고 일시적 과다공급은 적음
- 피해구제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피해조사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하는데는 현실적으로 한계
- 구제조치에 걸리는 시간 : 최소한 1년이상 소요

## 2. 대응현황과 문제점

→ 외국기업으로 부터의 보복조치가 두려워 관련업체가 제소 등의 공식적 대응을 꺼림 → 초기단계에서의 적기대응 곤란

- 국산개발하더라도 여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은 수입해야 하는 실정에서 덤핑제소 등을 할 경우 외국의 원자재공급 기피우려
  - 국산개발이 기술이전 또는 복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국내생산을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기술이전 기피, 특허클레임 제기우려
- 국내수요업체의 구매기피 → 대응책을 마련하더라도 수입대체 효과미미
- 품질, 신뢰성 불확실로 수입업체 사용기피
  - 개발초기에는 저가공세품에 비해 국산개발품이 고가

## 3. 관세대책 방향

- 기본적으로 국산개발제품 사용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필요 (상공부)
- 관세측면에서는 저가공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산 사용을 측면지원하기 위해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정관세 활용을 활성화
  - ※ 관세법제12조의2 :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 부과 가능
  - 산업피해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가능

### 가. 적기대응체제 마련

- 국내신규개발물품에 대한 외국의 저가공세사례를 산업피해구제지원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관으로 하여금 매월 조사, 당부

# 공지사항

에 보고토록 함

- 관세청·중소기업중앙회·상공회의소·전자공업진흥회·기계공업진흥회·섬유산업연합회

— 조사된 품목에 대하여는 상공부 등 주무부처에 통보하여 조정관세 필요성여부를 검토하도록 협조 요청

### 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차원에서 적극 운용

- 새로이 국산개발된 물품으로서 일시적인 관세인상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 관계부처 요청이 있을시 가급적 신규개발한 중소기업보호 차원에서 요건심사
  - 수외산입에 다소 부담을 주는 경우에도 국산개발에 따라 수입가격이 낮아진 만큼 어느정도 관세인상에 따른 부담을 분담할 필요

### 다. 조정관세의 수시발동

- 품목별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발동조치
- 참고자료 : 신규국산개발물품 및 저가공산품에 대한 관세인상조치 현황

#### <신규국산개발물품>

	품 명	종전-현행	적용기간	비 고
덤지 평관 방세	폴리아세탈	관세+1정상	'91.9.30	'89.1 국내양산개시 (한국엔지니어링프라 스타)
	수지	가격-덤평 가격	~'93.9.29	
조 정 관 세	크래드메탈	5%~11%	'92.5.11 ~'93.12.31	'91.9 국내양산개시 (주)창성
	컴퓨터주기관	11%~25%	'92.5.11 ~'93.12.31	
잠적 정용 세정 율지	방사니플	5%~11%	'92.7.1~	'88년 국산개발 (대한정밀)

#### <저가공산품>

품 목	종 전→현 행	적 용 기 간
나무젓가락	11% → 53%	'91.4.10~'93.3.31
목재부채	11% → 100%	'92.5.11~'93.12.31
면장갑	13% → 60%	"
면타올	11% → 75%	"
목탄	2% → 11%	"
이쑤시개	11% → 51%	"
환봉	11% → 51%	"
바스틱류	11% → 51%	"
내화벽돌	11% → 51%	"

### 개산환급율표 고시신청 안내

#### 1. 제도의 개요

당해업체의 품목별 전년도 평균환급실적의 95% 범위내에서 개산환급율표 작성고시 (입체신청 → 관세청장 작성고시)

- 선(기)적된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개산환급율표에 계기된 관세 등 환급금을 개산액으로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

※ 정산기간 : 3월(정산신청서류중 기납증이 한장이라도 첨부되면 6월 이내)

- 개산환급율표 고시업체의 개산환급율표 적용 여부는 환급신청 건별로 수출업체에서 임의 선택하는 것이므로 업체의 형편에 따라 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체는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2. 개산환급율표 고시신청시 접수

- 신청대상 : '91년도 수출물품별(HS 10단위) 개별환급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

— 접수기간 : '92. 7. 1 - 7.20까지

— 접수처 : 관세청 민원실 (135-702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 공지사항

### 3. 구비서류

- 개산환급율표 고시신청시 갑, 을, 병 각 1부.
- 각 신청 수출물품(HS 10단위) 별 대표적인 수출면장 사본 각 1매

### 4. 기타 참고사항

- 적용예정 : '92.8.15 이후 개신환급신청분 부터 적용
- 의문사항 문의처 :  
관세청 민원실 Tel (02)512~3100  
관세청 환급과 Tel (02)512~2303

### 2. 모집요령

-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선착순 마감
- 일정은 현지 상담주선 여건에 따라 약간 조정 가능
- 참가 확정후 예치금 30만원을 납부하되 동 금액은 추후 출국수속 비용 및 항공임으로 대체됨.

### 3. 참가업체 지원사항

현지 무역관의 홍보 및 상담주선,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지원, 참가업체 카타로그 송부, 시장개척단 홍보용 PROFILE 제작 배포, 상담장 상담지원, 상담결과 성약 후속지원, 국별 품목별 시장동향 및 정보 제공

4.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KOTRA 소정 양식), 서약서(KOTRA 소정 양식), 사업자등록증 1매, 파견자 사진 1매, 카다로그 20부

### 5. 신청 및 문의처 : KOTRA 시장개척부

- 중남미 개척단 (TEL : 551~4382 정준상)
- 남아프리카 개척단 (TEL : 551~4375 김평희)
- 아시아, 대양주 개척단 (TEL : 551~4366 양창병)
- 미 동남부 개척단 (TEL : 551~4379 고익성)
- FAX : 551~4373, 4394 (공통)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업체 모집 안내

KOTRA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금년 하반기중 아래와 같이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 파견 예정이오니 관심업체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파견계획

시장개척단명	시 기	지 역	신청기한	주요파견대상품목
1. 중남미 해외시장 개척단	9월 20일 -10월 5일 베네수엘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브라질	7월 15일	중남미, 남아프리카: 기계류 및 공구류, 문구, 완구, 전기, 전자, 스포츠 여행용품, 경보기류.
2. 남아프리카 해외시장 개척단	9월 20일 -10월 5일 "	남아공화국 스와질랜드 나미비아, 케냐	7월 15일	의료용품, 신발, 주방기기, 직물류 등 아시아, 대양주: 골프용품, 운동화, 의료용품 (문구).
3. 아시아 대양주 해외시장 개척단	10월 15일 -10월30일	싱가폴,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8월 5일	리본류, 자동차부품, 공구 및 기계류, 스포츠레저용품, 섬유직물, 전자부품 등 미동남부: 모조장신구, 스포츠 레저용품, 쇼핑백, 조명
4. 미동남부 해외시장 개척단	10월15일 -10월30일	달라스, 휴스턴, 아틀란타, 마이애미	8월 5일	기구, 소형전자제품, 사무기기, 자동차부품, 사진틀, 앨범 등

## EC 전자시장의 유통구조에 대한 세미나 안내

최근 EC 12개 회원국은 EC 단일 시장 및 단일 통화, 정치 통합 실행을 골자로한 유럽통합 조약을 정식 조인함으로써, 유럽통합에 한발씩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국내 전자업체



# 공지사항

섬유기계 및 부품, 포장기계 및 자재, 공작기계, 금속가공기계, 심품가공기계, 목가공기계,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사무용기기, 문방구류, 통신기기, 의료기기, 의약품, 농기계류, 화공약품, 플라스틱원료 및 몰드, 건축자재, 건설장비, 수송기계류, 소형플랜트, 가정용품, 농기계류, 화공약품, 플라스틱원료 및 몰드, 건축자재, 건설장비, 생활품 관련 소비재 전반

\* 신청기한 : '92. 7. 25 (토)  
\* 신청방법 : 당공사 소정 참가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 직접 신청

(1개 업체당 신청면적은 9 S/M 이상임)

\* 신청서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당공사 소정양식) 1부 / 출품품목 카타로그 2부 / 참가신청금 납부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사본 1매

\* 참가신청금 : S/M당 40,000원  
동 참가신청금은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참가비 일부로 전환하고 탈락시에는 반환함

\* 참가비 : 참가업체 선정후 별도 통보

※ 접수 및 문의처 : KOTRA 전시부 해외전시 2과 최광수

【TEL : 551-4422, FAX : 557-5784】

## 2. KOTRA 지원사항

- \* 전시장 및 기본전시장치 제공
- \* 전시품 현지 발송 및 통관지원 (발송비는 업체부담)
- \* 현지입국 등 기타 각종 행정지원

## 3. 참가신청

### 명량한 직장생활 캠페인 ②

#### <활기 넘친 직장 생활은 밝고 올바른 인사로부터>

“저기, 과장이 있다. 인사하기 싫으니 이쪽으로 가자.”

이런 경험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인사를 기피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사회인으로서, 또는 조직인으로서 큰 결함이 된다. 왜냐하면 사회의 모든 일은 인간관계 위에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거부이다. “나는 당신과의 인간관계를 거부합니다.”라는 것이나 같다.

저쪽에서 오는 상사에게 인사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일부러 피한다는 것은 그 상사와의 인간관계를 거부하는 결과가 된다. 상사와의 인간관계를 거부한다면 일은 할 수 없다.

좋은 업무는 직장의 좋은 인간관계로부터 생긴다. 좋은 인간관계는 미소짓는 인사없이서는 마련되지 않는다.

출근시나 퇴근시에 작은 소리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중에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지니스맨으로서의 실격이다.

아침에는 밝고 큰소리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자. 이 인사는 자기가 오늘도 무사히 출근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상사와 동료들 안심시키고 “자, 오늘도 의욕적으로 일합니다.”라는 결의의 뜻도 있다.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나 모기 소리같이 작은 소리로 인사하는 사람은 “별생각 없이 오늘도 출근했지만, 나의 존재에는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또는 “나는 오늘도 일할 의욕이 없습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과 같으며 다른 사람에게 기분상의 피해까지 준다.

귀가시에는 역시 큰소리로 “먼저 퇴근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한 다음 퇴근하자.

출퇴근시의 분명한 인사는 직장의 중요한 규율이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전자진흥 편집실】